



제 439회 국회 (정기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CDN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부여〉

■ 조인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62호)

2026. 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CDN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부여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조인철의원 등 11인

나. 발의연월일 : 2026. 4. 28.

다. 회부연월일 : 2026. 4.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7월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서비스(MS Azure) 장애로 국내 항공·게임 등 일부 서비스에서 접속 지연 및 운영 차질이 발생한 바 있으며, 2025년 11월에는 클라우드플레이어 시스템 장애로 챗GPT, 엑스(X), 페이스북 등 주요 웹사이트에서 일시적인 접속 오류가 발생하는 등 CDN·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와 같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일종인 CDN(Content Delivery Network)은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어, 해당 서비스의 불안정은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음.

그러나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및 국내 트래픽 비중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서비스 제공의 핵심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CDN 사업자는 규율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국내에 제공되는 클라우드 및 콘텐츠 전송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을 도모하는 한편, CDN 서비스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2조의7).

Ⅲ. 검토의견

1. CDN 사업자에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부여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의 기준을 현행 대통령령에서 법률에 상향입법하고, CDN¹⁾ 사업자에 대해서도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7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u>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u>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보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 ① <u>다음 각 호</u> ----- ----- ----- ----- ----- ----- ----- ----- ----- -----

1) Content Delivery Network: 웹사이트·앱의 이미지·영상·파일 같은 콘텐츠를 전 세계 여러 서버에 분산해 사용자에게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달하는 기술

현행	개정안
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⑤ (생략)	----- -----.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자 중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자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제6항에 따른 타인의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하는 사업을 하는 자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전기통신사업법령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주요 내용>

구 분	세부내용 ²⁾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 단말·사업자에 따른 차별 없이 안정적 서비스 제공 · 설비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 방지 · 서버 다중화, 전송량 최적화 등 트래픽 집중 대비 조치 · 트래픽 증가 대비 서버 용량 증가, 트래픽 경로 최적화 등 조치(필요시 ISP와 협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 이용자 요구사항 한국어 접수 및 실시간 처리 위한 온라인·ARS 시스템 확보 · 속도 저하·서비스 중단 등 발생 시 이용자 상담 연락처 고지 · 휴업·폐지 또는 이용자의 서비스 정지·해지 시 이용자 자료 전송 수단의 확보
기타	·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 상기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2)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②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가 사용하는 단말장치 또는 이용자가 가입한 기간통신사업자에 따른 차별(단말장치의 성능 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에 따른 차별은 제외한다) 없이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나.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등 기술적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다. 트래픽 발생량이 특정 사업용전기통신설비에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에 대비하여 서버의 다중

- 동 법 시행령에 따르면,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①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이고, ②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함³⁾.

- 2026년 8월 현재 위의 기준을 충족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구글,

화 또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안정적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로서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수행하는 조치

라. 트래픽 발생량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트래픽 발생량의 증가로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될 경우 서버 용량의 증가,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확보 및 트래픽 경로의 최적화 등의 부가통신사업자가 마련해야 할 조치 및 그 조치에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나 콘텐츠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와의 협의

마.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트래픽의 경로 변경 등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의 제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행위를 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사전 통보 조치

2.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온라인 및 전화자동응답 처리시스템의 확보

1) 이용자 요구사항을 한국어로 접수 및 처리할 수 있을 것

2)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

3) 영업시간 중 이용자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을 것

4) 법령의 해석이나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접수한 날부터 기산하여 3영업일 이내에 처리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이용자에게 안내할 수 있을 것

나. 제1호 각 목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전기통신설비의 사전점검,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기통신서비스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하여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의 고지

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사업을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이용자가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계약을 정지 또는 해지한 경우 이용자가 생성한 음성·데이터·영상 등의 자료 전송을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한 경우 해당 자료를 전송할 수 있는 수단의 확보

3. 이용요금의 합리적인 결제수단 마련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조치에 대한 자체 지침 마련

- 3)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 등) ① 법 제22조의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1.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일 것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국내 트래픽 발생량이 국내 기간통신사업자가 인터넷 서비스(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하루 평균 소통되는 전체 국내 트래픽 발생량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카카오, 네이버, 메타플랫폼즈, 넷플릭스서비스스코리아, 쿠팡, 티빙, 애플 등 총 8개사임.

○ 그런데, 최근 디지털 환경이 급속도로 발전·확장됨에 따라 데이터 전송 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서비스의 일종으로 콘텐츠 전송의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CDN(Content Delivery Network) 사업자에 대해서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기 어려워 규제의 공백이 존재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CDN이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세계 각지에 분산형 서버를 구축하여 데이터를 저장하고, 최적화하여 콘텐츠 전송 속도와 품질을 높이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하며, 현대 디지털 서비스의 핵심 기반 시설로 기능하고 있음.

- 기업 간 거래(B2B)를 중점으로 하는 CDN 사업의 특성상 최종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로 인해 현행법상 이용자 수 기준(일평균 국내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워 실제로는 디지털 서비스 제공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함에도 법적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임.

○ CDN 서비스의 불안정은 특정 플랫폼을 넘어 국가 전반의 네트워크 생태계의 마비를 초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25년 11월에는 **Cloudflare**(클라우드플레어)의 장애 발생으로 인해

ChatGPT, X, 스포티파이 등 수백만명이 접속하는 주요 웹사이트의 접속이 차단되고 디도스(DDoS) 방어 기능까지 함께 마비되는 피해가 발생한 바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CDN 사업자를 포함하고, 그 기준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입법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의무 대상자 포함 여부에 관한 명확성·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첫째, 개정안은 CDN 사업자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으로 추가하면서, 기존 대규모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기준과 달리 이용자 수나 트래픽 발생량 등 규모의 하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즉, 개정안에 따르면,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대기업뿐만 아니라, 소규모로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내 중소 IT 기업이나 스타트업까지 모두 동일한 법적 의무를 지게되어 과도한 행정적·기술적 부담으로 인한 중소 부가통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국가 및 사회 전반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CDN 사업자만이 의무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별도의 기준 마련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최근 장애를 일으킨 주요 CDN 사업자는 대부분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인데, 이들이 국내에 마련된 규제를 회피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에 미온적일 경우 실질적인 제재에 어려움이 있어, 결국 규제를 성실히 이행하는 국내사업자가 역차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의 이행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매년 1월 말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정명령⁵⁾ 또는 3천만원 이

4)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③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제51조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조사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2조의5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시정을 명한 경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

1. 제3조, 제4조, 제4조의2,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5까지, **제22조의7**부터 제22조의9까지, 제22조의11, 제23조, 제24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2조의3, 제32조의4, 제32조의6, 제32조의7, 제32조의8, 제32조의10,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1조, 제56조부터 제60조까지,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2조, 제64조부터 제66조까지, 제69조, 제73조부터 제75조까지, 제79조 또는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 및 제88조를 위반하거나 이들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자의 업무 처리절차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고 등에 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수리 등 지장을 제거하기

하의 과태료를 부과⁶⁾할 수 있음.

- 원칙적으로 이러한 규제는 해외 사업자가 해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국내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적용⁷⁾되나, 실질적으로는 해외 사업자가 자료 제출 및 시정명령에 따른 조치를 미이행하고 과태료의 납부를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어 집행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셋째, 개정안은 CDN 사업자를 “원본 서버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에 저장하여 전송”이라는 기술적 의미를 바탕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의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매우 넓게 해석되어 CDN 사업자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하게 될 여지가 있으므로, 하위법령을 통해 그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인터넷 서비스의 대부분은 캐시⁸⁾ 등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있고, 전형적인 CDN 서비스 외에도 클라우드 서비스, 스트리밍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6)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과태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4호의8부터 제4호의21까지, 제8호, 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해당하는 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8호 또는 제17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항제5호·제6호 또는 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의3. 제22조의7제3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을 한 자

7)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의2(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적용한다.

8) 웹 브라우저가 웹사이트 방문 시 이미지, 텍스트, 비디오 등 구성 요소를 컴퓨터에 임시로 저장해 두는 공간

서비스 등도 임시 저장 기능을 활용하고 있음.

-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의 CDN 서비스는 전통적인 캐시 방식뿐만 아니라 엣지 컴퓨팅⁹⁾이나 실시간 네트워크 상황에 따른 지능형 라우팅¹⁰⁾ 등 데이터 사본을 저장하지 않고도 콘텐츠 전송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는바, 데이터 사본의 저장을 전제로 하고 있는 개정안의 정의는 기술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유형의 CDN 서비스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넷째, 개정안은 불법정보 등 유통금지에 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¹¹⁾을 인용하여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의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CDN 서비스는 데이터의 사본을 “국내”에 임시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인접한 국가 등에 위치한 서버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도 국내 제공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규정 인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9) 데이터를 중앙 집중형 클라우드 서버가 아닌 데이터가 발생하는 근처(엣지, Edge)에서 처리하는 기술을 말하며, 실시간 응답이 필요한 자율주행차, 스마트 공장, 스마트 시티 등에서 주로 활용됨

10) 단순히 미리 정해진 규칙만으로 목적지로 트래픽을 보내는 대신, 성능, 가용성, 위치 등 실시간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경로를 동적으로 선택하는 방식

1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⑥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적으로 저장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사업의 종류 및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이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CDN 사업자 정의는 불법정보의 국내 유통방지라는 특정한 규제 목적에 따른 것으로, 이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상 CDN 사업자 정의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다. 정부 및 관계 단체 의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일부동의

- CDN 사업자에게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를 부여하여 장애 발생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가통신 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상 서비스 안정성 확보 대상 사업자의 지정 기준을 법률로 상향입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에 따르면 규제 대상 CDN 사업자를 분류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이 없이 모든 CDN 사업자를 규제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는 정량적인 기준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타 사업자(기간통신, IDC 등)와의 형평성 문제¹²⁾가 제기될 우려가 있음.

12) 기간통신사업자(가입자수 10만명 이상, 회선수 50만 이상), IDC(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

2)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 일부동의

- 개정안이 디지털 서비스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여 정보통신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려는 취지에 공감함.
- 다만, 개정안이 시장 영향력에 대한 기준 없이 CDN 사업 여부만을 기준으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행 규율 체계와 상이하여 다른 부가서비스사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우려되며, 규제 대상 범위를 데이터의 임시 저장 및 전송이라는 기술적 기능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위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신중검토

- CDN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라 하더라도 그 규모와 시장 영향력은 천차만별이며, 국내 이용자 수가 미미하거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이 사실상 무시할 만한 수준에 그치는 사업자도 다수 존재하는데, 이러한 시장 영향력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CDN 사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소지가 있음.

- 또한, 개정안은 CDN 사업자의 정의를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어 수범자에게 합리적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225